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02. 12. 24.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2002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2. 12. 23 :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주 준 길)

가. 제안이유

- 대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시·도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업무소관
실·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추진단』의 행정자치부 승인에 따라
사업소의 명칭, 설치근거 및 소관사무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복지환경국장의 분장사무 중 “대기·수질·유독물 등의 환경 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
- 한시기구로 신설되는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추진단』의 사업 소 명칭, 설치근거 및 소관사무 등을 명시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와 일부 공업지역 안의 사업장에 대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업무와
유독물 영업등록 등 환경 관리업무가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환경부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을 제204회 정례회에서 승인하면서
지적하였던 복지환경국 관련 분장사무를 신설하려는 것과
포스트 엑스포 대책 및 오송 생명과학단지 조성,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된 건설종합본부의 명칭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여부와**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추진단의 세부 직제 편제계획,
추진단의 소관사무 중 제4호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지원시설
준공은 국가 공단임에도 추진단의 업무분장에 포함한 사유,
밀레니엄 타운조성공사의 사업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신설되는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소관사무 중
오송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의
예산과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8
------------	----

제출연월일 : 2002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안이유

- 대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시·도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업무소관 실·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행자부 승인에 따라 사업소의 명칭, 설치근거 및 소관사무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복지환경국장의 분장사무중 “대기·수질·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
- 신설되는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사업소 명칭, 설치근거 및 소관사무 등을 명시

□ 의안전문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 발췌 : 별 첨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제7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기·수질·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제4장제1절제34조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11호로 하여 제4장제1절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제32조 내지 제35조)를 제4장제2절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제35조 내지 제38조)로 하고, 제2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제36조 내지 제38조)를 제3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제39조 내지 제41조)로, 제3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제39조 내지 제42조)를 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제42조 내지 제45조)로, 제4절 충청북도여성회관(제43조 내지 제45조)를 제5절 충청북도여성회관(제46조 내지 제48조)으로, 제5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46조 내지 제48조)를 제6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49조 내지 제51조)로, 제6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49조 내지 제51조)를 제7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2조 내지 제54조)로 하고, 제4장에 제1절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제32조 내지 제3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

제3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에서 추진되는 바이오산업추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이하 "바이오산업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바이오산업추진단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33조(단장)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합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소관사무)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바이오산업추진 기획홍보 및 행정지원
2. 바이오엑스포 상징물 이전 및 전시관·홍보교육관 건립운영
3. 바이오 국제학술회의 및 바이오이벤트 기념사업
4.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5. 생명과학단지 국책연구기관 이전 및 입주 지원
6. 밀레니엄타운 조성공사
7. 밀레니엄타운 사업자 선정 및 민자유치
8. 바이오신도시건설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9. 바이오신도시건설 기반시설 확충 및 조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복지환경국) (생략)	제9조(복지환경국) (현행과 같음)
1. 내지 6. (생략) <u><신 설></u>	1. 내지 6. (현행과 같음) 7. 대기·수질·유독물 등의 환경 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 10. (생략)	8. - 11. (현행과 같음)
제4장 사업소	제4장 사업소
	<u>제1절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u>
<u><신 설></u>	<p><u>제3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u> <u>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에서 추진</u> <u>되는 바이오산업 사업의 원활한 추</u> <u>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바</u> <u>이오산업추진단(이하 "바이오산업추진</u> <u>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u>②바이오산업추진단은 충청북도</u> <u>청주시 관내에 둔다.</u></p>
<u><신 설></u>	<p><u>제33조(단장)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단장을</u> <u>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u> <u>소관사무를 통합하며, 소속공무원을</u> <u>지휘·감독한다.</u></p>

현 행	개 정 안
	<u>제34조(소관사무)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은</u> <u>다음 사항을 관장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바이오산업추진 기획홍보 및 행정지원</u> <u>2. 바이오엑스포 상징물 이전</u> <u>및 전시관·홍보교육관 건립운영</u> <u>3. 바이오 국제학술회의 및 바이오</u> <u>이벤트 기념사업</u> <u>4.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u> <u>5. 생명과학단지 국책연구기관 이전</u> <u>및 입주 지원</u> <u>6. 밀레니엄타운 조성공사</u> <u>7. 밀레니엄타운 사업자 선정 및 민자유치</u> <u>8. 바이오신도시건설 기본계획 ·</u> <u>실시계획 수립</u> <u>9. 바이오신도시건설 기반시설</u> <u>확충 및 조성</u>
제1절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제2절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제32조 - 제33조 (생략)	제35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
제34조(소관사무) (생략)	제37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생략) <u>2. 오송신도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u> <u>조성사업</u> <u>3. - 12. (생략)</u>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u>2. - 11. (현행과 같음)</u>
제35조(지소) (생략)	제38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u>제2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u> <u>제36조 - 제38조 (생략)</u>	<u>제3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u> <u>제39조 - 제41조 (현행과 같음)</u>
<u>제3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u> <u>제39조 - 제42조 (생략)</u>	<u>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u> <u>제42조 - 제45조 (현행과 같음)</u>
<u>제4절 충청북도여성회관</u> <u>제43조 - 제45조 (생략)</u>	<u>제5절 충청북도여성회관</u> <u>제46조 - 제48조 (현행과 같음)</u>
<u>제5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u> <u>제46조 - 제48조 (생략)</u>	<u>제6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u> <u>제49조 - 제51조 (현행과 같음)</u>
<u>제6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u> <u>제49조 - 제51조 (생략)</u>	<u>제7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u> <u>제52조 - 제54조 (현행과 같음)</u>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 ⑤ (생략)

제105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